

제3089호
2024. 5. 1.

발행인 :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김길성
편집인 : 홍보담당관 유진영
전화 : 3396-4955
(http://www.junggu.seoul.kr)

선	기관 의 장
람	

구 보

● 자치법규

[입법예고]

- 제2024-471호 : 서울특별시 중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안 입법예고 2
- 제2024-472호 : 서울특별시 중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1
- 제2024-485호 : 「서울특별시 중구 경로당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4

● 공 고

- 제2024-477호 : 세운재정비축진지구 5-1·3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를 위한 공람·공고 17

※ 구보게재를 의뢰한 각 부서에 알려드립니다.
구보의 게재내용은 중구청 홈페이지<<http://www.junggu.seoul.kr>(행정정보→구보/입법예고) 클릭>에 게재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구보게재의뢰 TEL.(02)3396-4955 / FAX.(02)3396-9022/3
● 구보는 매주 수요일 발행이며, 발행일 3일 전까지 접수되어야 합니다.
※ 구보 게재일자가 문서 시행일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구보는 공문서의 효력을 가지며, 구 공무원은 반드시 읽어야 합니다.

공람												



자치법규

[입법예고]

- 서울특별시 중구 공고 제2024-471호

이 규칙(안)은 확정된 입법안이 아니므로 조례·규칙심의회, 규제개혁 위원회 및 구의회 심의 결과에 따라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4년 5월 1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서울특별시 중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 기금과 타 회계·기금 간 예수·예탁 절차, 기간, 이율 등 기금 운용에 필요한 세부사항 마련을 위한 규칙을 제정하여 기금의 안정적 운용 도모

2. 주요내용

- 예수에 관한 사항(안 제2조~제4조)

- 타 회계(또는 기금)의 여유자금의 예탁 기간은 통합계정에 자금이 입금된 날부터 1년으로 하고, 공공예금 수준의 이율을 적용하여 예탁 회계(또는 기금)에 이자를 보전하되 기금의 운용 및 재정상황을 고려하여 심 의위원회에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규정

- 예수금의 기한 전 상황은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 제한하고, 상환 필요시 기금운용관과 사전협의를 거치도록 규정
- 예탁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예탁 절차에 따라 통합기금운용관과 예탁 부서의 장이 각각 이행해야 할 세부적인 내용을 규정

3. 의견제출

이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24년 5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참조 : 기획예산과장, 주소 : 서울시 중구 창경궁로 17 중구청 기획예산과, 전화 : 02-3396-4

914, 팩스 : 02-3396-8657, email : ldh4238@junggu.seoul.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이 규칙의 입법안은 중구 홈페이지(<http://www.junggu.seoul.kr>) 및 구보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규칙 제 호

서울특별시 중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중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예수증서 교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관(이하 “통합기금운용관”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중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예수금에 대해서는 해당 회계의 재무관(분임재무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기금운용관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예수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3조(예수금의 기간 및 이자) ① 예탁 기간은 예수금이 입금된 날부터 1년 이상으로 한다.

② 예수금에 대한 이자율은 「서울특별시 중구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칙」(이하 “구 금고 운영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체결한 금고약정서에서 정한 공금예금 금리를 적용한다. 다만, 각 회계 또는 기금의 특성과 통합계정의 건전성을 고려하여 서울특별시 중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달리 정할 수 있다.

③ 예수금의 이자는 통합계정의 결산을 마친 후 연 1회 지급하되, 각 회계 또는 기금의 운용 성격에 따라 필요한 경우 이자 지급시기를 달리 정할 수 있다.

제4조(예수금의 기한 전 상환) ① 통합계정에 예탁한 부서는 회계 또는 기금 운용상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위원회의 심의·의결에 따라 예탁 기간의 만료 전이라도 예수금을 상환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예수금을 상환받으려는 경우에는 상환받고자 하는 날의 60일 전에 통합기금운용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5조(예탁신청 및 절차) ① 통합기금운용관은 통합계정으로부터 예탁받고자 하는 회계의 재무관 또는 기금운용관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예탁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예탁받고자 하는 회계의 재무관 또는 기금운용관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예탁신청서를 통합기금운용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예탁금을 수령한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자금인수 영수증을 작성하여 통합기금운용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통합기금에서 일반회계로 예탁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6조(예탁 기간) ① 예탁 기간은 3년 거치 5년 균등분할 상환의 범위에서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통합기금운용관은 예탁신청 부서의 자금 사정상 예탁 기간 만료일까지 예탁금의 상환이 곤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당초의 예탁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7조(이자 계산) ① 예탁금의 이율은 구 금고 운영규칙 제12조에 따라 체결한 금고 약정서에서 정한 대출금리를 고려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② 이자를 계산할 때 그 기간에는 예수 및 예탁한 날을 포함하며, 1년은 365일로 본다. 다만, 예탁기간 중 2월 29일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 윤년으로 보아 366일로 계산한다.

제8조(예탁금의 원리금 상환) ① 예탁금의 원금 및 이자의 상환 방법과 상환 시기는 제5조제1항에서 정한 예탁 약정에 따른다.

② 예탁신청 부서가 예탁금에 대한 원리금의 상환을 지체한 경우에는 상환하여야 할 원리금에 대하여 그 해당 상환기간 만료일부터 납부한 날의 전날까지의 일수에 따라 서울특별시 중구 금고의 연체 대출금리를 적용한 연체금을 납입하여야 한다.

③ 예탁신청 부서가 납부하는 원리금과 연체금은 납입일 현재의 연체금·이자·원금의 순서로 충당한다.

④ **예탁금 원리금의 상환일이 공휴일 또는 휴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을 상환일로 한다.**

제9조(준용)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않은 기금의 수입·지출·운용 및 결산에 대해서는 「서울특별시 중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른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예수증서

금액 : 금 원(금 원)

상기 금액을 「서울특별시 중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3조 및 「서울특별시 중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예수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월일

예탁부서 분 임 재 무 관 또 는 기 금 운 용 관 ○ ○ ○ (인)

수탁부서 서울특별시 중구 통합 재정 안정화 기금 운용 관 ○ ○ ○ (인)

서울특별시 중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 계정) 예탁 약정서

○○○○년도 서울특별시 중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 계정)의 자금을 서울특별시 중구 ○○회계 또는 ○○기금에 예탁함에 있어서 필요한 모든 사항에 관하여 서울특별시 중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관(이하 “통합기금운용관”이라 한다)과 ○○회계의 분임재무관 또는 ○○기금운용관(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은 다음과 같이 예탁약정을 체결한다.

제1조(예탁금액) ① 통합기금운용관이 수탁기관에게 예탁하는 금액의 한도는 아래와 같이 한다.

1. 예탁금액 : 금_____원(금_____원)

② 예탁금은 실제 예탁된 금액으로 하며, 예탁금 교부일자에 예탁된 것으로 한다.

제2조(예탁조건) 기금의 예탁조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이자율 : 연 _____%

다만, 예탁금에 대한 원리금의 상환을 지체한 때에는 정해진 상환일의 다음 날부터 납부한 날까지의 일수에 _____%를 적용한 연체금을 납입하여야 한다.

2. 원리금상환방법 : _____년 거치 _____년 균등분할상환

3. 예탁금 상환 시 원리금과 연체금은 납입일 현재의 연체금·이자·원금의 순으로 충당한다.

4. 원리금 상환일이 공휴일 또는 휴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날을 상환일로 한다.

5. 원리금납입계좌 : 서울특별시 중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 계정의 지정계좌

제3조(기간의 계산) ① 예탁금의 이자를 계산함에 있어서 그 기간에는 예탁한 날

을 포함하며, 납부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1년은 365일로 계산한다. 단, 예탁기간 중 2월 29일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366일로 계산한다.

제4조(해석) 이 약정서 내용에 해석상 이견이 있거나 규정되지 않은 사항에 관하여는 관계법규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통합기금운용관의 해석에 따른다.

제5조(효력발생과 종료) 이 계약의 효력은 예탁일로부터 발생하며 수탁기관의 모든 의무가 완전히 이행되었을 때 종료된다.

예탁부서와 수탁부서는 위 약정서의 모든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며, 이 계약의 성립을 입증하기 위하여 약정서 2통을 작성하여 각각 직인을 날인한 후 각 1통씩 보관한다.

년 월 일

예탁부서 서울특별시 중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관 ○○○ (인)

수탁부서 분임재무관 또는 기금운용관 ○○○ (인)

서울특별시 중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 계정) 예탁 신청서

1. 신청부서 :

2. 사업명 :

3. 목적 및 필요성 :

4. 신청액 : 금 원(금 원)

5. 기타사항

○ 입금 계좌번호 :

○ 예탁금 교부희망일 :

위와 같이 서울특별시 중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의 예탁금 교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분임 재무관 또는 기금운용관 ○ ○ ○ (인)

서울특별시 중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관 귀하

자금인수 영수증

금액 : 금 원(금 원)

상기 금액을 「서울특별시 중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2항에 따
라 통합계정으로부터 예탁금의 인수자금으로 정히 영수합니다.

년 월 일

분임 재무관 또는 기금운용관 ○ ○ ○ (인)

서울특별시 중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관 귀하

[입법예고]

● 서울특별시 중구 공고 제2024-472호

이 규칙(안)은 확정된 입법안이 아니므로 조례·규칙심의회, 규제개혁 위원회 및 구의회 심의 결과에 따라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릴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4년 5월 1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서울특별시 중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국민권익위원회의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관리·운용 합리성 제고를 위한 조례 개정 권고 이행
- 행정안전부의 순세계잉여금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지방재정법」 개정 예고 및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개정 독려

2. 주요내용

- 재정안정화계정 적립 기준 완화(안 제4조)
 - 직전 회계연도 결산서 상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이 직전 3년 평균 금액보다 100분의 10 이상 증가한 경우, 그 증가분의 100분의 5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적립하도록 규정
- 기금의 효율적 관리(안 제5조)
 - 고금리 예금 예치 등 효율적인 자금 운용으로 이자수입 손실을 최소화하도록 규정
- 위원회의 심의에 관한 사항(안 제7조)
 - 재정안정화계정 적립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며, 심의내역 및 금융기관 세부 예치현황을 위원회에 보고하도록 규정

3.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24년 5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참조 : 기획예산과장, 주소 : 서울시 중구 창경궁로 17 중구청 기획예산과, 전화 : 02-3396-4914, 팩스 : 02-3396-8657, email : ldh4238@junggu.seoul.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이 조례의 입법안은 중구 홈페이지(<http://www.junggu.seoul.kr>) 및 구보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중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1호 중 “10% 이상 증가한”을 “100분의 10 이상 증가한”으로, “10% 이상에”를 “100분의 10 이상에”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최근”을 “직전”으로, “금액의 110%를 초과하는”을 “금액보다 100분의 10 이상 증가한”으로, “초과분의 10%”를 “증가분의 100분의 50”으로 한다.

제5조제1항을 제목 외의 부분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총전의 제1항) 중 “설치하여”를 “설치하되 여유자금에 대해서는 이자율이 높은 금융상품으로”로 한다.

제7조제2항제5호를 제6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재정안정화계정 적립에 관한 사항

③ 제1항 각 호의 심의를 위하여 금융기관 예치현황(금융상품별 계좌번호·금액, 약정기간, 이자율, 예상 이자액 등)을 심의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기금운용관은 매년 다음 각 호의 심의위원회 활동 내역을 관리하여야 한다.

1. 심의위원회 회의 개최 실적
2. 심의위원회 주요 심의·의결 내용
3. 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변경사항 등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4조(재정안정화계정의 재원과 용도) ① 재정안정화계정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지방자치법」 제150조제1항에 따른 직전 회계연도 결산서상 지방세 세입액이 전년 대비 10% 이상 증가한 경우, 그 초과분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 2. 직전 회계연도 결산서상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이 최근 3년 평균 금액의 110%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 3. (생략) ②·③ (생략)	제4조(재정안정화계정의 재원과 용도) ① ----- -----. 1. ----- ----- 100분의 10 이상 증가한 ----- 100분의 10 이상에 ----- 2. ----- 직전 ----- 금액보다 100분의 10 이상 증가한 ----- 증가분의 100분의 50 ----- 3. (현행과 같음) ②·③ (현행과 같음)
제5조(기금의 관리·운용 등) ① 구청장은 기금을 구 금고에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예치·관리하고,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하여야 한다.	제5조(기금의 관리·운용 등) ----- ----- 설치하되 여유자금에 대해서는 이자율이 높은 금융상품으로 ---.
제7조(위원회의 설치) ① (생략)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 4. (생략) <신설> 5. (생략) <신설> <신설>	제7조(위원회의 설치) ① (현행과 같음) ② -----. 1. ~ 4. (현행과 같음) 5. 재정안정화계정 적립에 관한 사항 6. (현행 제5호와 같음) ③ 제1항 각 호의 심의를 위하여 금융기관 예치현황(금융상품별 계좌번호·금액, 약정기간, 이자율, 예상 이자액 등)을 심의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기금운용관은 매년 다음 각 호의 심의위원회 활동 내역을 관리하여야 한다. 1. 심의위원회 회의 개최 실적 2. 심의위원회 주요 심의의결 내용 3. 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변경사항 등

[입법예고]

● 서울특별시 중구 공고 제2024-485호

이 규칙(안)은 확정된 입법안이 아니므로 조례·규칙심의회, 규제개혁 위원회 및 구의회 심의 결과에 따라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경로당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4년 5월 1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서울특별시 중구 경로당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중구 경로당의 효율적 운영을 통한 중구 어르신의 복지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지역봉사지도원」 위촉 및 지원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본 조례를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노인복지법 제24조와 동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른 지역봉사지도원 규정신설

3. 의견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24년 5월 21일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참조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주소 : 서울시 중구 창경궁로 17, 어르신장애인복지과 어르신시설팀), 전화 : 02-3396-5524, 팩스 : 02-3396-8733, 전자우편 : jjiy0520@seoul.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이 조례의 입법안은 중구 홈페이지(<http://www.junggu.seoul.kr>) 및 구보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붙임 서울특별시 중구 경로당 운영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부.

서울특별시 중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중구 경로당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구 경로당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부터 제12조까지를 각각 제10조부터 제13조까지로 하고, 제9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지역봉사지도원) ① 구청장은 경로당 운영 지원 등을 위하여 법 제24조에 따라 사회적 신망과 경험이 있는 노인을 지역봉사지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지역봉사지도원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 「노인복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8조제3항제3호에서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중구 노인복지정책의 홍보 및 안내

2. 경로당 이용자에 대한 생활지도

3. 경로당 유지 및 안전관리

4. 기타 경로당 운영에 필요한 활동 지원

④ 구청장은 지역봉사지도원이 영 제18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촉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신설>	제9조(지역봉사지도원) ① 구청장은 경로당 운영 지원 등을 위하여 법 제24조에 따라 사회적 신망과 경험이 있는 노인을 지역봉사지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지역봉사지도원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 「노인복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8조제3항제3호에서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중구 노인복지정책의 홍보 및 안내 2. 경로당 이용자에 대한 생활지도 3. 경로당 유지 및 안전관리 4. 기타 경로당 운영에 필요한 활동 지원 ④ 구청장은 지역봉사지도원이 영 제18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촉하여야 한다.
제9조 ~ 제12조 (생략)	제10조 ~ 제13조 (현행 제9조부터 제12조까지와 같음)

공 고

● 서울특별시 중구 공고 제2024-477호

세운재정비촉진지구 5-1·3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를
위한 공람·공고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6-365호(2006.10.26)로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9-107호(2009.3.19.),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4-119호(2014.3.27.) 및 제2023-471호(2023.10.26.)로 재정비촉진계획(변경)결정, 서울특별시 중구 고시 제2020-120호(2020.9.16.)로 사업시행계획인가(5-1구역), 서울특별시 중구 고시 제2021-72호(2021.6.2.)로 사업시행계획인가(5-3구역)된 세운재정비촉진지구 5-1·3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에 대하여, 사업시행자로부터 세운 재정비촉진지구 5-1·3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사업시행계획(변경) 인가 신청서가 제출되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 제56조 및 동법 시행령 제49조에 따른 관계서류 공람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사업인정에 관한 의견청취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5월 1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1. 사업개요

가. 사업명칭 : 세운재정비촉진지구 5-1·3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나. 위치및면적 : 서울특별시 중구 산림동 190-3 일대 / 7,672.4㎡

다.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세운5구역PFV(주) 대표 권옥선

- 주 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공원로 115, 14층(여의도동, 세우빌딩)

라. 사업기간 :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일로부터 68개월

마. 사업시행계획인가일

- 세운5-1구역 : 2020. 09. 16.

- 세운5-3구역 : 2021. 06. 02.

2. 공람개요

가. 공고기간 : 2024.5.1.(수) ~ 2024.5.15.(수)(14일간)

나. 공람장소 : 중구청 도심재정비전략추진단(☎02-3396-5732)

다. 변경내용 : 세운재정비촉진지구 5-1·3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에 따른 사업시행계획 변경

라. 관계도서 : 공람장소에 비치

마. 공고방법 : 구보 게재

3. 기타사항

- 구역 내 토지등소유자와 그 밖의 정비사업과 관련된 이해관계자는 공람기간 내 공람장소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토지등소유자 및 이해관계자에게는 본 공고내용을 개별통지하나, 미 수령자에 대하여는 본 공고로 통지를 갈음합니다.